

발 간 등 록 번 호

11-1543000-100074-10

www.mafra.go.kr

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서

2025. 1.



농림축산식품부

CONTENTS

목차

CHAPTER 1.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	1
I. 사업개요	3
1. 사업목적	3
2. 근거법령	3
3. 자원 구성 및 예산	4
4. 추진경과	4
II.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요건 등 주요 내용	5
1.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	5
2. 지급대상 농업인등 자격요건	11
3. 소농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	19
4. 지급단가	23
5. 재배면적 조정의무	24
6. 공익직불 준수사항	25
7. 부정수급 방지	34
8. 부정수급, 착오등, 감액지급 등 행정처분	36
9. 공익직불사업의 정보화	47
III. 사업추진 절차	64
1. 사업 준비단계	65
2.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및 접수	71
3. 등록증발급 및 정보 공개	84
4. 변경등록 및 실시간 검증	88
5.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농관원·지자체 합동 현장조사 및 결과처리	96
6. 준수사항 이행점검	109
7. 교부, 지급, 정산보고 등	111
IV. 평가 및 환류	114


CHAPTER 2.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침	115
I.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	117
II. 농약 등 안전사용(잔류기준) 준수	126
III.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	138
IV.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	148
V.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	162
VI. 영농폐기물 등의 적정 처리	175
VII.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	184
VIII.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	190
IX. 기타(관련 법상) 준수사항	198
CHAPTER 3. 관련 서식	203

CHAPTER 1

기본형 공익직불사업
시행지침



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

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입니다.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	전화번호
농림축산식품부	공익직불정책과	기본형 공익직불사업	과 장 044-201-1771 계 장 044-201-1776 담당자 044-201-1777
		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관리	계 장 044-201-1774 담당자 044-201-1778
		지자체 및 민원	담당자 044-201-1781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	직불관리과	공익직불 상담 및 부정수급 신고 등	1334 내선1: 비대면 ARS 간편신청 내선2: 개인정보 활용 동의 내선3: 대면교육 이수확인 내선4: 제도 관련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 내선5: 시스템 관련 문의
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	디지털농정실 (Agrix)	직불금 비대면 신청 시스템 상담지원	

I 사업개요

1 사업목적

-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, 농촌유지, 식품안전 등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도모

2 근거법령

-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 및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

3 재원 구성 및 예산

☑ 국고 100%, 예산 2,633,487백만원

4 추진경과

- ☑ ('01) 논농업직불제 도입 * 「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」 개정
- ☑ ('03)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* 「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정
- ☑ ('05) 고정직불과 변동직불로 개편 * 「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정
- ☑ ('15) 쌀직불금과 밭고정직불금 통합 * 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정
- ☑ ('20) 쌀직불·밭고정·조건불리직불사업을 '기본형 공익직불사업'으로 통합
*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전부 개정('19.12.31.)
- ☑ ('22)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 확대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
*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일부 개정('22.10.18.)
- ☑ ('23) 농업직불제 확대·개편 계획 발표('23.4.6)
* '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 수준으로 확대,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·농촌의 공익증진 기능 강화 초점
- ☑ ('24) 소농직불금 농가당 지급단가 인상(120 →130만원)
*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일부 개정('24.2.20.)
- ☑ ('25)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인상(100~205만원/ha → 136~215만원/ha)
* 「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」 고시(제2020-37호) 개정('25. 2월 중)

II

기본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요건 등 주요 내용



1

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

가. 「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농어업경영체육성법’)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(「농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)

① 종전의 쌀·밭·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

▽ (쌀직불) '98.1.1~'00.12.31일까지 논농업(벼, 연근, 미나리,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.)에 이용된 농지

* 다만, '97.12.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(1)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, (2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, 풍수해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포함 가능

▽ (밭직불) '12.1.1~'14.12.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

* 다만, '11.12.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(1)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, (2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, 풍수해 사유로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포함 가능

▽ (조건불리직불) '03.1.1~'05.12.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

② 상기 쌀·밭·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 중 기본직불 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「농지법」 상의 농지이어야 함

나. 다만,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

① 「하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

* 다만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토지분에 대해 시장·군수가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

② 「농지법」 제34조·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(농지전용허가·신고·협약이 의제되는 경우 포함)

* 「농지법」 제39조(전용허가의 취소 등)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해당 허가가 취소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, 조업의 정지,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

③ 「농지법」 제36조·제36조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(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·협약이 의제되는 경우 포함)

* 「농지법」 제39조(전용허가의 취소 등)에 따라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농지가 해당 허가가 취소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, 조업의 정지, 사업 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지급 대상 농지에 포함 가능

④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

* 2016.1.21.일 이전에 형질 변경하여 농지로 인정받아 종전의 직불금을 지원받던 임야는 산지 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가능. 다만 농지로 인정받기 위하여 농지 대장에 등록하여야 함

⑤ 부정수급(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·수령, 농지를 분할 등)으로 등록 제한 기간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

* 부정수급자가 (1)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농지이거나 (2) 등록제한 처분 이후 새로 구매한 농지 등으로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모든 농지를 의미

⑥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되,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지구·지역·단지의 농지 중 (1)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 분에 대해 (2)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급 대상 농지로 인정

▽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,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

▽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토지

▽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

▽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

⑦ 「농지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

* 제3자에게 임대하였더라도 처분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

⑧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지급 대상 확정(9.30일 이전) 전까지 “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”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

▽ 농지대장 시행('22.8.18일)에 따라 임대차계약 신규·갱신이 필요한 경우 농지 대장의 등록정보를 활용

▽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이 소유한 농지는 부동산업이 금지되어 농업인이 임대차 등을 통해 기본직불을 신청·등록 불가(「농어업경영체육성법」 제19조의5)

⑨ 지급대상 농지를 중복신청(기본직불 신청 면적 합이 공부상 농지면적을 초과)한 경우

▽ 공동소유, 공동경작하는 경우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분의 면적을 인정

▽ 같은 농지를 중복하여 등록한 경우 지급대상자 확정(9.30일) 이전에 지자체는 실제 경작자의 실경작 농지면적으로 수정 → 9.30일 이후 중복신청 필지는 기본직불 등록한 농업인 모두 지급대상에서 제외

⑩ 필지 기준 지급대상 농지 중 “농지의 형상 및 기능”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면적* (폐경)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

* 농지가 아닌 토지(산지, 초지 등), 불경지(미관리 및 방치 등), 묘지, 폐기물·모래·자갈적지, 골재채취장·양어장, 건축물부지·주차장, 정원(조경수, 관목수 등 식재), 공사장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면적

▽ 기본직불 등록한 농지가 필지 단위로 경작할 수 없는 농지(전체 폐경 : 건물, 공원, 호수, 텃밭* 등)인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고 종전에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조치

* 주택과 그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에서 제외

** 공부상 지목이 농지의 이용과 관계없는 공장용지, 철도용지, 잡종지, 주유소 등이라고 하더라도 주용도 이외 일부만 경작할 때에도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

- ☞ 농작물 경작·재배에 이용(휴경 포함)되며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·관리하는 농지 면적만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포함
- ☞ 필지 기준 기본직불에서는 경작에 이용될 수 없는 면적을 신청한 경우(일부 폐경) 해당 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하여 전체 직불금 수령액의 10% 감액 대상
- ☞ 다만, 「농지법」 제2조제1호 나목에서 농지의 개량시설(유지, 양·배수시설, 수로, 농로, 제방 등)은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 면적에서 제외되나 감액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음

⑪ 기본직불 등록한 농지 중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(9.30일 이전)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 취소된 농지

- ☑ 농지전용(②), 지목이 임야인 농지(④), 농지처분명령(⑦), 임대차계약(단계적 적용)에 대한 정보(⑧)는 농지대장의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검증
- ☑ 부정수급자 소유 농지(⑤), 폐경(⑩), 경영체 등록취소 농지(⑪)은 등록신청연도에 사전검증하여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여 안내
- ☑ 하천구역 농지(①), 개발지역 농지(⑥), 중복신청 농지(⑨), 기본직불 등록 이후 경영체 등록취소 농지(⑪)는 읍·면·동에서 점검하여 검증

참고 1

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판단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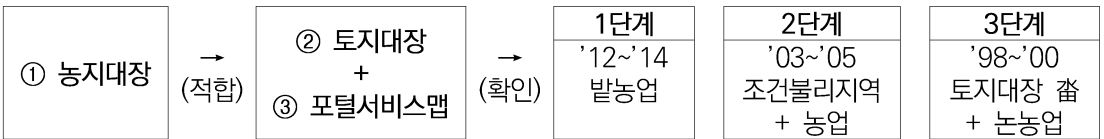
- ☑ 「농업농촌공익직불법」 내용 중 「23년부터 '17~'19년도 종전의 쌀·밭·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」 요건은 삭제
- ☑ 그러나 「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(국내지원 정책의 시행)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쌀·밭·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자격요건은 유지 필요

1 (직불금 수령이력이 있는 농지) 필지 기준으로 (1) 과거 직불금(쌀·밭·조건불리·기본직불금)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+ (2) 현재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

* 다만,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제외 사유(농지전용 등)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

-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는 '22년 실태조사 및 기본직불 지급정보 등을 참고하여 사전에 DB 구축하여 지급대상 농지의 검증, 등록 등 활용

2 (직불금 수령이력이 없는 농지) 필지 기준으로 농지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토지대장 (이력정보 포함), 포털서비스맵 등을 활용하여 기준연도에 농지 이용 형태를 증명



- ① (농지대장)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중 과거 직불금 수령이 없는 농지일 때
(1) 사업연도에 농지대장에 등록되고 (2) 지급대상 농지 제외 사유가 없는 경우
*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지가 농지대장에 미등록되면 경작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 제외
- ② (토지대장 단절) 현재 지번이 기준연도 기준으로 지목(전·답·과수원)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* 토지대장 이력 정보를 확인하여 기준연도 지번 기준으로 확인
- ③ (기준연도 확인) 1단계(현재 田 + '12~'14 밭농업) → 2단계('03~'05 조건불리지역 + 농업) → 3단계(현재 췌 + '12~'14 논농업 + '98~'00 토지대장 췌) 순으로 확인
 - ('12~'14/'03~'05) (1) 현재 지번과 '12~'14년 토지대장 지번이 일치(토지대장이 단절된 경우는 ②적용)하고 (2) 포털서비스맵 확인 결과 '12~'14년 중 1회 이상 실제 밭·과수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→ 밭직불
 - ('98~'00년) (1) 현재 지번과 '12~'14년 토지대장 지번이 일치(토지대장이 단절된 경우는 ②적용)하고 (2) 포털서비스맵 확인 결과 '12~'14년 중 3년 연속 실제 논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→ 쌀직불

참고 2

농지대장을 활용한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검증

- ☑ 종전의 농지원부가 「농지법」 개정에 따라 제49조부터 제50조까지에서 정한 '농지대장'으로 전환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농지대장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검증에 포함

* 「농지법」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의 '임대차현황' '처분명령', '농지전용'의 정보

1 (임대차) '23년부터 신규·갱신이 필요한 임대차 정보는 농지대장의 임대차 현황에 기록된 정보로 활용 → 기본직불사업에서 임대차계약 서류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

- ▽ '23년부터 공익직불사업 및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관련 신규·갱신이 필요한 임대차 정보, 국·공유지는 농지대장을 통해 확인
 - ▽ 기본직불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임대차계약 인정
 -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농지*, 종종 농지** 등은 실경작 여부 확인 후 1년 단위 연장(~'25년), '26년부터는 신청 및 지급 제외
- * 소유자 사망(상속자 불분명), 행방불명, 소유자 미복구, 외국인 소유 등으로 「지방세법」 제107조제3항에 따라 재산세납부자 또는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계약 등
- ** 종종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23조 등 농지법 상 허용되는 임대차로 농지대장에 임대차 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직불금 신청 및 지급 가능

2 (지목이 임야) 지목이 임야인 경우 농지/산지의 구분을 위하여 농지대장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가능

- ▽ 다만 지목이 임야인 경우 국·공유지, 「산지관리법」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·준보전산지, 산지일시사용 허가, 산림경영계획 수립·인가 등이 확인되는 경우 농지에서 제외
- * 2016.1.21.일 이전에 형질 변경하여 농지로 인정받아 종전의 직불금을 지원받던 임야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가능. 다만 농지로 인정받기 위하여 농지 대장에 등록하여야 함

3 (농지전용) 현재 농어촌공사로부터 확인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와 더불어 농지대장에서 농지전용 허가·협의·신고가 된 경우 해당 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

- ▽ 지자체는 농지전용 허가·협의·신고가 된 경우 농지대장을 우선 현행화하여 정보 부재로 인하여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

4 (처분 현황)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해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

- ▽ 지자체는 농지 처분명령을 하였을 경우 농지대장을 우선 현행화하여 정보 부재로 인하여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

가. 「농업경영체육성법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(변경 등록 포함)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(이하 '농업인등')

*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「농업경영체육성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

나.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등은 지급대상 농지 1천㎡ 이상(폐경 및 휴경 제외)에서 농업에 종사(일부 위탁경영 포함)하여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

① (기존수혜자) '16~'19년 기간 중 쌀·밭·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, 또는 '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

② (정책대상자) 후계농업경영인, 전업농업인, 청년농업인 등 농식품부 소관 정책대상자

▽ (후계농업경영인) 「후계청년농업인법」 제8조제1항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

▽ (전업농업인 등)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(이하 '농어촌공사법')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(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)

③ (신규대상자) 기존수혜자 및 정책대상자가 아닌 농업인등은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㎡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

《 신규대상자는 아래의 사항을 증명해야 함 》

◆ 기본직불 등록하려는 이전 연도부터 계속해서 직불로 신청할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0.1ha 이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유지 여부

◆ 전년도 타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은 지급대상 농지면적을 제외하고 신규 농업인이 실경작했다고 증명이 되는 지급대상 농지 0.1ha 이상(폐경 및 휴경 제외) 여부

▽ (농업인) 농지 1천㎡ 이상(휴경·폐경면적은 제외)에서 ▽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▽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

▽ (농업법인) 농지 50천㎡ 이상(휴경·폐경면적은 제외)에서 ▽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▽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